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연월일 | 2020. . .<br>(제 회)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
| 제출연월일 | 20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합병·분할한 경우 등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배출량 산정계획서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외부 검증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업무를 검증심사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4호, 2020. 3. 24. 공포, 2020. 6. 1. 시행)됨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를 정하고,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배출권의 무상할당 대상 업종 등을 정하고,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검증심사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안 제10조)

- 1)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사유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대상이 되는 자발적 참여업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정함.
- 2)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에 대한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받은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함.

나.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안 제11조)

- 1) 할당대상업체는 권리와 의무의 이전·승계에 대한 사실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2)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할당대상업체의 변경 사실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함.

다. 무상할당 업종 등(안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 1)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업종에 따라 무상할당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2)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해서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함.

라. 신청에 의한 배출권 추가 할당(안 제27조제5항)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되는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되어 할당대상업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공사의 시행이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 준수를 위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증가하는 등의 경우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배출권 할당의 취소(안 제29조제3항)

주무관청은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을 단위로 결정된 할당량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바. 배출권시장 조성자(안 제37조)

- 1)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업무로서 배출권 매도 또는 매수 호가의 제시, 배출권의 거래 등을 정하고, 배출권시장 조성자는 매월 환경부장관에게 활동 실적을 제출해 그 적절성을 평가받도록 함.
- 2)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하거나 활동 실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사.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40조)

- 1) 외부 검증 전문기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 2) 외부 검증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하고, 지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3) 외부 검증 전문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검증 업무 수행 결과를 적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아. 검증심사원의 자격 등(안 제41조)

- 1) 광물,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폐기물, 농축산 및 임업 분야 등을 검증심사원이 검증할 수 있는 전문분야로 정함.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거나 검증심사원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람은 검증심사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후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⑤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 후 세 번째 계획기간(이하 “3차 계획기간”이라 한다) 이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에 관한 사항
5. 제47조제4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에 관한 사항
6.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하는 배출권 수량 등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7.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국내 전력수요의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이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차입 및 상쇄의 기준·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항제7호에 따라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할당계획을 관보 및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센터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외교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간사위원(이하 “간사위원”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④ 간사위원은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할당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검토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2. 심의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할당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제5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할당위원회의 위원(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할당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할당위원회의 위원이나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할당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할당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할당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①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 ②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4조, 제5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할당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

항

4. 제20조제4항에 따른 할당신청서 제출 및 심사 절차,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9항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
7. 제29조제13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8. 제42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9. 제48조제8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승인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10. 제49조제8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6. 국무조정실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 환경부장관

- 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 나. 법 제8조의2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 다.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 라.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접수 및 배출권의 할당·통보
- 마. 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 바.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 사.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아.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 자.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 차.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자의 거래신고 수리 및 배출권 거래 내용의 등록
- 카.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설치·운영, 운영규정 승인 및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
- 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의 평가 및 시정요구
- 파.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
- 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 거.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지정취소, 업무정지·시정명령, 검증업무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공개
- 너.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취소·자격정지
- 더. 법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 러.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머.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 접수 및 등록
- 버.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차입 승인 및 처리

- 서. 법 제29조에 따른 상쇄
- 어. 법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의 관리
- 저.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채납처분
- 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운영
- 커. 법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
- 터. 법 제37조의2에 따른 청문
- 퍼. 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
- 허. 법 제39조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 고.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사항만 해당한다)
- 노.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다음 각 목의 사항: 부문별 관장기관(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관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 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 나.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의 사항만 해당한다)
-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최근 3년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신규진입자로 지정·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이하 “신규진

입자기준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체(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보고를 1회 이상 한 업체만 해당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명세서의 작성 및 보고를 1회 이상 하였을 것

3. 이전 계획기간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지 않았을 것(해당 업체가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였다가 관리업체가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자발적 참여업체는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를 통한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신규 진입자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고시해야 한다.

⑦ 자발적 참여업체 중 다음 계획기간에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업체는 다음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의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즉시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발적 참여업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지정

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를 완료하고,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의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제11조(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이전·승계에 대한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할당대상업체의 변경 사실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제4항에 따른 배출권 이전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된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 이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를 포함한다)의 지정, 지정취소 및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신규진입자 지정 및 고시 절차) 환경부장관은 신규진입자로서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를 법 제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해야 한다.

제13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에 대한 통보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는 최초로 지정된 연도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 준수 실적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최초로 지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할당, 거래 및 보고·검증·인증 등에 관한 정보가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등

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 및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장

③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의2제3항·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또는 취소량

2. 법 제12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량

3. 법 제16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4. 법 제17조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량

5.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6.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배출권의 수량

7.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량 및 차입량

8. 법 제29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의 수량

9.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받은 보고서(이하 “검증보고서”라 한다)

10.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④ 법 제11조제5항에서 “배출권의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3.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산한 배출권의 총보유량
4. 그 밖에 제16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제15조(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공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
2. 제14조제3항 각 호(제7호·제8호·제11호·제1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정보

제16조(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에 오류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수정한 경우에는 배출권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4조, 제15조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 및 기업 영업비밀의 보호, 법 제39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량을 결정한다.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법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영 제3조제4항제1호·제5호·제7호·제8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한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사항
  3.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기술수준
  4. 제18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5.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기준기간(신규진입자의 경우에는 신규진입자 기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업장 또는 시설을 변동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6. 제품 생산량이나 용역량 또는 열·연료 사용량 등 단위 활동자료량(이하 “활동자료량”이라 한다)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 자료를 국내의 동종(同種) 사업장·시설 또는 공정의 실적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이하 “배출효율기준방식”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① 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차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② 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2차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

③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 동향 및 이전 계획기간의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감축 효과 및 과거 감축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업종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⑤ 제4항 및 제28조제7항에 따른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의 유상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무상할당 업종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3 이상인 업종으로서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

제20조(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단위별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단위

② 배출권 할당 시 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하려는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에 검증기관의 검증(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 포함하여 이미 검증을 받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다음 각 호의 단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생산·제공하는 생산품목·용역별

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용역을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시설·공정 또는 원료·연료별 단위

3.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용역을 생산·제공함에 따른 시설·공정의 온실가스 배출활동별 단위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권의 할당량 산정방법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에는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량 산정계획서 또는 검증보고서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2. 제3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와 그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미 제출된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그 검증보고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정이나 보완을 명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배출량 산정계획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보완하여 지체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할당대상업체는 제출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할당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3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① 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

2. 제26조제2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배출권 추가 할당

3. 제28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

4. 제29조제8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②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탄소시장·온실가스감축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⑥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의·의결 등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4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2개월 전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을 배

출권이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되면 해당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제2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실적으로 한다.

1.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최초로 목표를 설정받은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으로서 목표관리 실적에 반영하지 않은 실적

2.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최초로 목표를 설정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인정된 전체 감축목표량에 대한 초과달성분

②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으려는 할당대상업체는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정된 조기감축실적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분과 3차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한다. 다만, 인정된 전체 조기감축실적이 제4항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은 할당대상업체별로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하여

할당되는 배출권의 총수량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기여 계수를 곱한 값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조기감축실적 기여계수 =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 전체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의 합

④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의 수량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이하 “배출권 예비분”이라 한다)에서 사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절차 및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26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 추가 할당) ① 할당대상업체가 배출효율기준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해당 이행연도에 온

실가스를 배출한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에 활동자료량이 발생한 경우”로 본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을 대상 단위로 결정된 할당량의 100분의 5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연료·송전의 제약 등을 말하며,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발전시설에서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지시를 이행한 결과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의무를 준수한 해당 이행연도 열 공급량(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열 공급량보다 증가한 경우

3.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한 결과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이 강화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할당한 오염부하량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공사(시설의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시행한 결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5.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정책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를 준수한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6. 할당대상업체가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 추가 할당량 결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업체별로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보다 배출량이 증가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추가 할당량

보다 적게 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 따라 산정된 배출권 추가 할당량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결정된 추가 할당량을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⑥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⑦ 유상으로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이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되면 해당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⑨ 제27조, 이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사업장을 분할·양도·임대하였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을 단위로 결정된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소한다.

1.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사업장 폐쇄일부터 남아 있는 해당 이행연도의 날짜에 비례한 할당량

2.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에 할당된 배출권: 전부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을 단위로 결정된 할당량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시설의 분할·양도·임대하였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중 그 사업장을 대상 단위로 결정된 할당량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배출권 할당량을 취소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한다.

⑦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의 발생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⑪ 환경부장관이 제10항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한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는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그 취소량보다 적으면 해당 계획기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⑫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 제출을 명할 때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명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하여 부족한 할당 취소량만큼 자신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하도록 하는 방

법으로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할당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배출권 예비분)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한 배출권 할당
2. 할당대상업체 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의 배출권 보유로 인한 유동성 저해 방지

####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31조(배출권 거래) ① 온실가스는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sub>2</sub>-eq)으로 환산한다.

② 배출권은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환산하여 거래한다.

③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는 1 배출권으로 한다.

④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래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 중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가 아닌 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거래해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장내거래”라 한다)

2. 제1호 외의 장소에서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

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2.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3.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제33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및 수량

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이 적절하면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2.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준수 여부

3. 양수인과 양도인의 합의 여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권 이전 및 취소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③ 제32조, 제33조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등록 수수료

및 배출권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면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폐쇄 및 운영 중단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 회원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한 사항
3. 장내거래의 대상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배출권 거래 수탁, 영업을 위한 관리기준 설정 및 그 감시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거래소 지정 기준,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35조(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①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배출권의 매매에 관한 업무
3. 배출권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할 배출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4. 배출권 매매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審理)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5. 배출권의 경매 업무
6. 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 업무
8.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②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소를 감독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

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배출권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휴장 또는 거래의 중단을 명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무를 하는 자로 한다.

제37조(시장조성자) ① 시장조성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배출권 매도 또는 매수 호가의 제시
2. 배출권의 거래
3.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배출권 거래중개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병·파산·폐업 등의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활동 실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 시장조성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조성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환경부장관에게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평가할 때 배출권 거래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해당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조성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배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

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 이상 낮은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다른 시장 안정화 조치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안정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유한도 설정을 철회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직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보유량이 2만5천 배출권 미만인 거래 참여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최대 보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최소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의 100분의 70 이상

2. 최대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할당

대상업체가 아닌 거래 참여자의 경우에는 직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보유량을 말한다)의 100분의 150 이하

⑥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제45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차입한도의 확대 또는 축소

2. 제47조제4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확대 또는 축소

3.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

⑦ 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할당위원회의 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를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거나 종료하는 즉시 해당 시장 안정화 조치의 주요 사유 및 내용 또는 종료사실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장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

제39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측정·보고·검증이 가능

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주요 시설·공정별 연료 및 원료 소비량, 제품생산량 또는 용역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신설·증설 및 폐쇄 시설을 포함한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률
3. 사업장별 사용·발생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발생량·판매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발생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률
4. 시설·공정, 배출활동으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종류 및 규모
5. 사업장·시설·공정별, 생산제품 또는 용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포집·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측정 방법 및 근거
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9. 온실가스 흡수·제거 실적
10. 업체 또는 사업장의 매출액
11. 업체 또는 사업장의 시설별 감축실적(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출된 명세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세서를 변경하여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정이나 보완을 명한 경우에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명세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전부를 배출권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 중 온실가스 배출총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제6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할당

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세서 제출 및 검증,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을 말한다) 상근 5명 이상과 시설, 장비를 갖추는 것

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검증기관의 업무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검증하는 업무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업무기준을 말한다.

⑤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할당대상업체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수정을 해야 한다.

1. 명세서의 내용이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2. 명세서를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3. 실제 배출량과 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⑥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검증기관은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⑨ 검증기관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제41조제7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성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현장 확인 및 참관심사를 포함한다)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41조(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이 검증할 수 있는 전문분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증심사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전문분야를 세분화할

수 있다.

1. 광물 분야

2. 화학 분야

3. 철강·금속 분야

4. 전기·전자 분야

5. 폐기물 분야

6. 농축산 및 임업 분야

7. 공통 분야

② 환경부장관은 검증심사원에게 자격을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검증심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격 취소를 통보받은 검증심사원은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⑥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⑦ 제4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 검증업무 수행결과 의 제출 및 평가, 검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정지 등에 관한 세

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배출량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 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배 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항에 따른 명세서 제출기한이 지 나도록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 를 거쳐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배출량이나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직권 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배출량 인증 결과를 해당 할 당대상업체에 통지할 때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에도 그 내용을 통보해 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인증위원회) ①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산림청, 그 밖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관련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명세서에 대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

2. 제48조에 따른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

3. 제49조제4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결과

4. 그 밖에 법 제25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 및 법 제29조에 따른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중 인증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인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⑥ 인증위원회의 회의, 개의·의결 등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및 상쇄

제44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하여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법 제38조제1항 제3호·제4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제출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및 법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의 등록번호

2.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배출권 차입량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려는 상쇄배출권의 수량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제출된 배출권을 이전하고 폐기한다.

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배출권 제출의무를 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이루어진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2.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3.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제45조(배출권의 차입)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시 제출해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times$  100분의 15
2. 해당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times$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의 배출권 차입한도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times$  100분의 50)]

제46조(배출권 이월 및 차입의 절차) ① 법 제28조에 따라 배출권의 이

월 및 차입을 하려는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2. 법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②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로서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이행연도 종료일에서 5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유한 배출권의 이월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7조(상쇄) ①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라 한다)은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의 사업범위에서 발생하여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전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시행된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는 경우 중복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전환한 상쇄배출권은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⑤ 상쇄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1.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되거나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2. 법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제48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취소)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사업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외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한다. 다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계량화가 가능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4.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제8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③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상쇄 실적의 지속성 및 정량화된 검증 가능성

## 2. 상쇄 사업 추진방법 및 모니터링의 적절성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 및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⑦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사업을 말하며, 해당 사업의 종류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의 유효기간 등 외부사업 승인·승인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인증취소)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
2.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3. 그 밖에 부문별 관장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인증결과 및 해당 인증시 검토한 사항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48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시 검토한 사항 및 이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증결과와 검토 사항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다.

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에 대해서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인증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제48조제7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결과로 발생되거나, 그와 동일한 감축량을 다른 제도 또는 사업에서 중복으로 활용한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3항에 따라 인증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기업 등의 기준,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의 기준 등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쇄등록부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등을 위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상쇄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외부사업의 계획서
2.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실적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 공개 및 수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출권등록부”는 “상쇄등록부”로,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는 “상쇄등록부에 외부사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51조(과징금)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 중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 부과사유, 예정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한 예정금액과 납부기한으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동안 8회 이내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의 손실로 인하여 경영에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징금의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필요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했음에도 그 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1.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 기간 중에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된 경우

2.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기한 중에 어느 하나가 지난 경우

제52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장 보칙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제품·시설·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3.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4.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5.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의 검증·평가 기술개발 사업
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8.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② 정부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준하여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할당대상업체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이하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②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
2. 법 제25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 및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제55조(이의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이의 내용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거부: 그 거부를 통보받은 날
2. 제37조제6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 요구: 그 시정 요구를 통보받은 날

③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48조제4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의 취소: 그 승인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
2. 제49조제5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의 취소: 그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

④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따라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제56조(수수료) 법 제3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는 제16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2.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
3. 법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
4. 제15조, 제3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시정 명령
2.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및 평가
3. 법 제37조제5호의2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3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보

6. 법 제43조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2.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신규진입자 및 자발적 참여업체를 포함한다)의 지정·지정취소 및 권리와 의무의 승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와 관련된 자료의 분석 및 검토
3.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관련 비율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4.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5.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6. 제48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절차 및 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절차에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6.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정하는 기관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증 발급, 자격의 취소·정지에 관한 지원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 거래제정 등록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②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5년 12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제36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제3조(배출권의 할당, 추가 할당, 조정 및 할당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차 계획기간 및 2차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권 할당, 추가 할당, 조정 및 할당 취소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7조·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로 한다.

[별표 1]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제19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times \text{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 \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2. 무역집약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 + \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 (\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 + \text{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3. 제1호에 따른 비용발생도 및 제2호에 따른 무역집약도를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기준기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5년 전부터 3년 동안을 말한다. 다만,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산정 시 기준기간은 2차 계획기간에 한정하여 1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와 2차 이행연도로 한다.

나.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해당 업종에 속한 할당 대상업체들의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을 연평균한 값을 말한다.

다.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이란 기준기간 중에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한다.

라.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수입액은 해당 업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수입액·매출액·부가가치 생산액·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이 호에서 “연평균 수출액등”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연평균 수출액등의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기관이 서로 다른 통계 수치를 보유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국가등의 연평균 수출액등의 통계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산정한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연평균 수출액등을 산정할 수 있다.

[별표 2]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제31조제1항 관련)

| 온실가스의 종류                |              | 지구온난화 계수 |
|-------------------------|--------------|----------|
| 이산화탄소(CO <sub>2</sub> ) |              | 1        |
| 메탄(CH <sub>4</sub> )    |              | 21       |
| 아산화질소(N <sub>2</sub> O) |              | 310      |
| 수소불화탄소(HFCs)            | HFC-23       | 11,700   |
|                         | HFC-32       | 650      |
|                         | HFC-41       | 150      |
|                         | HFC-43-10mee | 1,300    |
|                         | HFC-125      | 2,800    |
|                         | HFC-134      | 1,000    |
|                         | HFC-134a     | 1,300    |
|                         | HFC-143      | 300      |
|                         | HFC-143a     | 3,800    |
|                         | HFC-152a     | 140      |
|                         | HFC-227ea    | 2,900    |
|                         | HFC-236fa    | 6,300    |
|                         | HFC-245ca    | 560      |
| 과불화탄소(PFCs)             | PFC-14       | 6,500    |
|                         | PFC-116      | 9,200    |
|                         | PFC-218      | 7,000    |
|                         | PFC-31-10    | 7,000    |
|                         | PFC-c318     | 8,700    |
|                         | PFC-41-12    | 7,500    |
|                         | PFC-51-14    | 7,400    |
| 육불화황(SF <sub>6</sub> )  |              | 23,900   |

[별표 3]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제40조제4항 관련)

1.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거나 지정서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2. 검증기관은 지정받지 않은 검증분야에 대해서 검증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3.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보안 조치를 하고, 검증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소속 임직원 및 검증심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5.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문이나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가. 온실가스 통계의 설계·개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을 위한 사업의 설계·개발 및 이행·관리
  - 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보고·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의 설계·개발 및 이행·관리
  - 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측정·분석 기기의 설치 및 관리
  - 라.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중개 및 자산관리,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경제성 평가
  - 마. 특정 할당대상업체만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관련 책자 및 절차의 준비·작성

[별표 4]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0조제6항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24조의2제1호·제2호·제3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의2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
| 나. 검증기관이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 | 법 제24조의2 제4항제2호 | 지정취소 |    |    |    |

|                                                                                                                               |                 |      |             |             |      |
|-------------------------------------------------------------------------------------------------------------------------------|-----------------|------|-------------|-------------|------|
| 을 종료한 경우                                                                                                                      |                 |      |             |             |      |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 법 제24조의2 제4항제3호 | 지정취소 |             |             |      |
| 라.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br>1)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br>2) 별표 3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의2 제4항제4호 | 지정취소 | 업무정지<br>1개월 | 업무정지<br>3개월 | 지정취소 |
| 마.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4조의2 제4항제4호 | 지정취소 |             |             |      |
| 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4조의2 제4항제5호 | 지정취소 |             |             |      |

#### [별표 5]

####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1조제3항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법 제24조의3제1호·제2호에 따른 자격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24조의3 제3항제1호 | 자격취소  |       |       |       |
|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 법 제24조의3 제3항제2호 | 자격취소  |       |       |       |

|                                                         |                 |                       |             |      |  |
|---------------------------------------------------------|-----------------|-----------------------|-------------|------|--|
| 다.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의3 제3항제3호 |                       |             |      |  |
| 1)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자격정지<br>1개월           | 자격정지<br>3개월 | 자격취소 |  |
| 2) 별표 6 제2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자격정지<br>3개월           | 자격취소        |      |  |
| 3) 별표 6 제3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자격취소                  |             |      |  |
| 4) 별표 6 제4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자격정지<br>(교육이수<br>시까지) |             |      |  |
| 6) 별표 6 제5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자격정지<br>3개월           | 자격취소        |      |  |
| 7) 별표 6 제6호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자격정지<br>1개월           | 자격정지<br>3개월 | 자격취소 |  |
| 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4조의3 제3항제3호 | 자격취소                  |             |      |  |
| 마. 필수적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 법 제24조의3 제3항제4호 | 자격정지<br>3개월           | 자격취소        |      |  |
| 바. 장기간(최종 검증종료일부터 연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의3 제3항제4호 | 자격정지<br>3개월           | 자격취소        |      |  |

[별표 6]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제41조제6항 관련)

1.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검증하거나 자격의 범위 또는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 검증하지 않아야 한다.
2. 자신이 검증을 맡은 할당대상업체를 위하여 별표 3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3. 별표 3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이나 용역에 참여한 경우 그 자문·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검증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4. 제41조제7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필수적인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5. 검증심사원은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검증기관에서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6. 검증보고서의 배출량 오류 정도가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환경부 기후경제과 |                  |
| 연 락 처     | (044) 201 - 6590 |